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최호성¹, 김정대^{2*}

¹한국산학연합회 산학연사업부 부장, ²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사무관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Ho-Sung Choi¹, Jung-Dae Kim^{2*}

¹Department Leader, Division of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²Deputy Director, Division of Regional Business Innovation Polic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요 약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기간·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 3중세트

Abstract Recent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Korean-style restriction sandbox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so that new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an be commercialized withou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ptly check regulations centering on four fields, including industrial convergence, ICT, FinTech,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nd to allow experimental, proof and market releases by setting certain conditions(zone, period, scale, etc.). However, despite the same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eld applied, differences in application subject, whether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fics, system of push ahead decision-making and whether support of financial and taxation are show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esen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ing of Korean-style regulation sandbox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entering on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Field, ICT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Tech field's Financial Innovation Act and Regional Special Zone Act in the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Sector.

Key Words :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ancial Innovation Act, Regional Special Zone Act,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and Regulation Innovation Triple Set

*Corresponding Author : Jung-Dae Kim (jdkim96@korea.kr)

Received February 14, 2019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March 7,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최근 세계 주요 국가는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5년 핀테크 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실험·검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규제 샌드박스 법안인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을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기간·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4개 법령을 개정·발의하여, 2018년 10월 16일에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이 개정 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이 제정 되었다. 제·개정된 규제혁신 4개 법령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가 동일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융합·ICT 등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과 법령의 소관 부처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의사결정 추진체계, 재정·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법령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1, 5].

2. 규제 샌드박스 적용 4법의 주요내용

2.1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2].

2011년 10월 처음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인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기술·신서비스 제품이 급속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허가 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요건 등을 적용이 어려워 시장으로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제도가 규정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2 ICT 융합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1962년 시행된 전기통신법을 시작으로 전과관리법 등 다수의 통신 관련법이 제정·개정 되었으나 2014년 방송통신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ICT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창업 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 진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의 산업에 대한 지원, 신규 융복합 기술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고 ICT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를 촉진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이 제정되었다[3, 6].

정보통신융합법은 규제 개선에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명시하고 관련 제도로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 처리와 임시허가를 규정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입법취지 강화를 위해 누구나 정보 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사업이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기존 법령의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개발자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의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실증특례를 도입하였다.

추진체계 부분에서는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2.3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아직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테스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은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도 개별법에 열거된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 규제의 틀을 뛰어넘은 실증은 불가능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금융혁신법을 제정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7].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금융서비스와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혁신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4].

2.4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

2004년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특구 계획에 따라 선택된 규제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의 유연성 부족과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 시도조차 허용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8]. 또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신기술·신서비스를 적용한 제품 등이 규제 제약 없이 실증과 허가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9].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며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하는 한편,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도로법 등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의사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구성하며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 특례 등 및 규제 개

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10, 11].

3. 규제샌드박스 4법의 비교·분석

3.1 유사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4개의 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및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적 가치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Table 1은 현재의 규제체제로 인하여 신속히 도입할 수 없는 신기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규제 3종 세트(①규제의 신속 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1. regulatory 3 set

Sortation	Demonstration and Test Purpose (limits to zones, terms, scale, etc.)	market launch purpose (limitation of zone and scale is not or low)
regulatory ambiguity	① regulatory ambiguity Quickly check whether permission is required, whether regulations exist, etc.	
legal vacuum Application nonconformity	② Regulatory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Exclusion of regulations application for testing and verification of safety, etc. (Within two years, one extension is possible)	③ Provisional permission Provisional permission granted within 2 years for market release(one extension is possible)
Prohibition ·No permission	Need to revise and make up relevant laws	

규제의 신속 확인은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허가 등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30일 이내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1].

실증특례는 관계법령의 모호, 불합리 또는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을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하여 기간·구역·규모 등 일정 범위로 한정된 조건에서 기존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실증특례 신청 시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 이내의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 받을 수도 있다. 실증특례 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허가는 혁신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모호 또는 불합리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한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으로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에게 관계 법령을 반드시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례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으로 실증테스트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 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토록 하였고,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2 차이점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은 규제혁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구 내에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을, 정보통신융합법은 ICT 융합을, 금융혁신법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지역특구법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의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12]. Table2에서는 각각의 규제관련 법률들의 적용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four law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sandboxes

Sortation Element	Regional Special Zone Act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C Convergence Act	Financial Innovation Act
principle of 'preemptive permission, post regulation'	regulation			No regulation
target area	non-capital area	Nationwide		
Tri-set of Regulatory Innovation	Application			
Regulation quick check	Application			
Reply period	Thirty days application			
Provisional permission	Application			No application
Validity period	2+2 years applicatio			
demonstration special case	Application			
Validity period	2+2 years applicatio * Regional special zone is 2 years + Extended once within the scope of the designated innovation special zone			
Enumerated Regulatory Special Cases	201 factors application	No application		
chairman of the committee	Prime Minister (assistant administrator, MSS minister)	Minister		FSC chairman of the committee

신청자격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반면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함으로써 신청 주체의 차이가 있다. 단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더라도 특구계획은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은 규제 샌드박스 이외의 규제 특례가 없는 반면 지역특구법은 규제 샌드박스외 기존 개별 법령에서 정한 201개의 규제특례가 동시에 적용된다.

의사결정 추진체계의 차이점을 보면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혁신법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심의·의결하는 반면 지역특구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 목적 및 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특례 등의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4개의 법령 중 지역특구법만 규제특례등과 더불어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 결론

규제혁신 4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점이 발생한다. 기업들은 기존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입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령이 정비 될 때까지 임시허가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투자와 회수 등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 등이 적용된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택권의 확대와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사회적 이슈인 양질의 일자리가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과금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13].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설계할 때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따라 최적화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14].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상호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기존의 지역특화발전 특구 등 대부분의 특구제도가 재정지원 없이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그쳤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또는 지자체간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정책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지역특구법에서 관계부처 간의 업무협조 체계를 명시하는 등 지역과 정책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15].

정부는 2019년 시행예정인 규제혁신 4법의 하위법령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절차가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Choi & J. D. Kim.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2), 31-36.
- [2] C. W. Lim. (2011). The meaning 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s passage of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Statistical Monthly of Machinery Industry*, 2011(4), 30-35.
- [3] J. H. Jung. (2015). Legal Issues on the Temporary Permit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Fusion Act. *The Legal Essay*, 39(2), 81-114.
- [4] S. H. Yang. (2018).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KIRI Weekly*, 460, 1-8.
- [5] H. O. Choi. (2017). [Regulatory Sandbox]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 *Trends and Issues*, (33), 1-20.
- [6] Y. H. Choi. (2018).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ICT Secto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Regulatory Sandboxes. *Korea Institute of Policy Planning Seminar*, 2018(2), 3-10.
- [7] H. G. Kang. (2018). a review of a special bill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Economic Law Study*, 17(3), 3-30.
- [8] J. C. Nam. (2016). Measures to Promote Regional Economy through Regulatory Free Zone National Territory Policy Brief. (591), 1-6.
- [9] K. J. Kim. (2018). administrative action law implications according to regulatory redesign. *Legal Issues*, 38(2), 169-218.
- [10] H. Y. Lee. (2009). Regional Special Zone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Homeland*, 6-16.
- [11] Y. W. Hwang & K. C. Kang. (2006).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Tourism Leisure Research*, 18(4), 229-241.
- [12] J. H. Jung.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and misunderstanding: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2017, 45-64.
- [13] S. Y. Kim. (2018). UK regulatory sandboxes and implications. *KIRI Weekly (Essue)*, 435, 10-17.
- [14] M. J. Kim. (2016). Name the issue: the industrial ecology that makes regulation relaxed. *Urban Affairs*, 51(566), 12-13.
- [15] S. T. Kim, S. H. Jeon & B. I. Lim. (2018). An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 of Tax Exemption in R&D Special Clust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09-416.

최 호 성(Choi, Ho Sung)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경영학석사)
- 2017년 2월 :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공학박사)
- 2006년 5월 ~ 현재 : 한국산학연합회 재직 중

· 관심분야 : 지역정책, 지역전략
· E-Mail : chs@auri.go.kr

김 정 대(Kim, Jung Dae)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금속공학 과(공학석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공학박사)
- 2006년 11월 ~ 현재 : 중소벤처기업부

· 관심분야 : 지역정책, 규제특례
· E-Mail : jdkim96@korea.kr